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7187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김○○, 박○○
피고, 항소인	○○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471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30.
판 결 선 고	2024. 2.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9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7,132,799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9

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 규정'이란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지방세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위 '종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다)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9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심○○

판사 김○○